

## 2026년 청년월세 지원사업 모집공고

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여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자립기반을 구축함으로써,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「2026년 청년월세 지원사업」 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.

2026년 3월 27일

전주시장

### □ 사업개요

- 사업명 : 2026년 청년월세 지원사업
- 지원대상 : 전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19~34세(1991년생~2007년생) 이하 부모님과 별도 거주 무주택 청년
- 지원자격
  - 소득요건 :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60% 이하 / 원가구(청년+부모) 기준 중위소득 100% 이하
  - 재산요건 : 청년가구 1억 2,200만원 이하 / 원가구(청년+부모) 4억 7,000만원 이하
- 신청기간 : 2026. 3. 30.(월) 09:00 ~ 5. 29.(금) 16:00
- 신청방법 : 온라인(복지로 [www.bokjiro.go.kr](http://www.bokjiro.go.kr)), 오프라인(주민센터 내방)
- 선정발표 : 2026. 9. 14.(월) ※ 개별통보 예정
- 선정규모 : 1,600명\* 정도 ※ 예산범위 내 변동 가능
  - \* 자격요건 통과자가 선정규모 초과 시 '청년월세 지원사업 운영지침'에서 규정한 별도의 선정기준에 따라 대상자의 소득 및 재산 등을 고려하여 선발
- 지원내용 : 실제 납부하는 월세의 최대 20만원까지 지원(생애 1회, 최대 24회)
- 지급기간 : ~ 2028. 12.

### □ 자가진단 서비스(신청 전 권장)

- 신청 전 「복지로([www.bokjiro.go.kr](http://www.bokjiro.go.kr)) > 복지서비스 > 모의계산 > 청년월세지원」에서 자가진단 실시

## □ 제출서류

### ○ 제출서류 목록

구분	제출서류
필수서류	① 청년월세 지원 신청서
	② 소득재산 신고서
	③ 서약서
	④ 임대차계약서(확정일자 또는 공인중개사 날인 원칙) - 날인이 불가능할 경우 임대차계약서와 함께 거주지 등기부등본 제출 - 대학기숙사 거주시 : 입실확인서, 기숙사비 납입영수증 - 회사기숙사 거주시 : 입실확인서, 기숙사비 납입영수증, 사업자등록증 - 하숙 및 고시원 거주시 : 입실확인서, 기숙사비 납입영수증, 임대사업자등록증
	⑤ 가족관계증명서(상세) 각 1부(청년, 부·모 모두) -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(상세)
	⑥ 월세이체 증빙서류(최근 3개월 이내) - 3개월이 되지 않는다면 최근 1개월 분 제출
	⑦ 청년 본인의 입금통장 사본
추가서류 (해당시)	⑧ 부채 관련 증빙서류(대출내역 및 대출금 잔액증명서) - 청년가구 : 임차보증금 마련 용도 / 원가구 : 주택구입 및 임차보증금 마련 용도만 인정 - 취득한 주택의 등기사항증명서 상 소유권이전 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대출한 자금의 경우 주택구입자금으로 인정
	⑨ 청년의 부모가 자가주택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부모의 임대차계약서
	⑩ 혼인관계증명서(상세) - 이혼한 경우
	⑪ 난민인정증명서(난민) ⑫ 임신증빙서류(외국인) - 본인 또는 대한민국 국적의 배우자가 임신중인 경우 - 임신사실확인서, 국민건강보험공단 확인서 등
<p><b>&lt; 제출 시 유의사항 &gt;</b></p> <p>- 신청서류의 보완 또는 조사에 필요한 경우 추가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월세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. 또한 <b>보완요청 후 15일 이내 자료 미 제출 시 직권으로 신청이 취소됩니다.</b> (서류 미비 시 보완요청 후 필요서류가 모두 제출된 날을 신청일로 적용)</p> <p>- 신청자의 허위·착오, 보완 미비, 연락 불능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합니다.</p>	

## □ 신청방법

- 온라인신청 : 청년 본인이 복지로(www.bokjiro.go.kr)를 통해 신청
- 방문신청 : 청년이 거주하는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청년 본인이 내방하여 신청
  -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 신청가능
    - 대리신청은 지급대상자의 법정대리인,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(동거인 제외),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·비속에 한하여 가능
    - ☞ (작성이 완료된) 위임장, 대리인 및 위임자 신분증 지참

## □ 자격요건

- 아래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청년 가구
  - 주소 : 신청일 기준 전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, 부모와 별도 거주하면서 임대차 계약서상 임차 건물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자
  - 연령 : 19~34세 이하(주민등록등본상 출생연도 1991년~2007년)
  - 주택 : 「주택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‘주택\*’ 및 제4호에 따른 ‘준주택\*\*’을 포함하여 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에 거주
    - \* 주택 : 단독주택, 아파트,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등    \*\* 준주택 : 기숙사, 고시원, 오피스텔 등(기타 시가 인정하는 경우)
  - 소득 및 재산기준 : 청년가구와 원가구의 소득 및 재산을 고려

### < 청년가구 및 원가구의 소득·재산 요건 >

구분	㉠청년가구	㉡원가구
㉢소득평가액	기준 중위소득 60% 이하 (1인가구 기준 153.8만원/월)	기준 중위소득 100% 이하 (3인가구 기준 535.9만원/월)
㉣재산가액	1.22억원 이하	4.7억원 이하

㉠ (청년가구) 청년 + 배우자 + 직계비속 + 동일 주소지에 거주중인 「민법」상 가족  
 ㉡ (원가구) 청년가구 + 1촌이내 직계혈족(부모)  
 ㉢ (소득평가액) 상시근로소득 + 기타사업소득 + 재산소득 + 공적이전소득 - 근로·사업소득 공제(30%)  
 ㉣ (재산가액) 일반재산가액 + 자동차가액 - 부채(주택구입 및 임차보증금 마련 용도)

### < 2026년 기준 중위소득 >

(단위:원)

구분	1인	2인	3인	4인	비고
중위소득 60%	1,538,543	2,519,575	3,215,422	3,896,843	청년가구
중위소득 100%	2,564,238	4,199,292	5,359,036	6,494,738	원가구

※ 다만, 아래와 같은 경우 원가구 소득·재산은 고려하지 않음

① 30세 이상, ② 혼인(이혼), ③ 미혼부모 또는 ④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%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·군·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

## □ 신청자 조사 및 결정

- 제출된 신청서를 토대로 공적자료 조회를 통한 소득·재산조사(조사 시점 기준 적용)
  - ※ 소득·재산조사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(통보)된 공적자료를 우선 적용
- 신청서 접수 사항과 공적자료 조회결과, 생활실태조사 결과 등의 종합적인 조사 1회를 통해 월세지원 대상 결정
- 선정기준 (적합 대상자가 선정 예정자를 초과할 경우)

- 대상자별 청년가구의 소득(25%), 청년가구의 재산(25%), 원가구의 소득(25%), 원가구의 재산(25%) 반영비율을 적용하여 총점이 낮은 자를 우선 선발하되, 동점일 경우 청년가구 소득 점수가 낮은 순으로 결정
- 청년가구 소득점수(25점) = 청년가구의 소득 / 청년가구 소득기준(기준 중위소득 60%) × 25
- 청년가구 재산점수(25점) = 청년가구의 재산 / 청년가구 재산기준(1억 2천2백만원) × 25
- 원가구 소득점수(25점) = 원가구의 소득 / 원가구 소득기준(기준 중위소득 100%) × 25
- 원가구 재산점수(25점) = 원가구의 재산 / 원가구 재산기준(4억7천만원) × 25
- 총 점수(100점) = 청년가구 소득점수 + 청년가구 재산점수 + 원가구 소득점수 + 원가구 재산점수
  - \* 원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보지 않는 경우, 원가구와 청년가구를 동일하게 취급하여 평가

- 결과통보 : 심사 및 선정 후 2026년 9월 14일 개별 통보 ※ 서면 또는 문자메시지 등
- 이의신청 : 심사결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전주시청 청년활력과로 이의 신청서 제출 (이의신청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심사결과 통보)

## □ 지원내용

- 실제 납부하는 월 임대료의 최대 20만원까지 최대 24개월(회) 동안 매월 지원 (관리비 제외)
-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월세지원액에서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(청년주거급여 분리 지급액 포함)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
- 매월 25일 현금지급(25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전날 지급)
- 신규선정자 : 2026. 9. 23.(수) 첫 급여지급(5월부터 5개월분 소급 지급)
- 지급기간 : ~ 2028년 12월 (28년까지 24개월 지원을 다 못 받았다면, 29년 이후 신청기간에 재신청(소득,재산 재심사)하여 선정될 시 지원을 재개하고 잔여 횟수만 지원)

## □ 신청제외 대상

-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
- 주택 소유자(분양권, 입주권 포함) 및 주거 점유형태가 자가·전세인 경우
- 직계존속, 형제, 자매 등 2촌 이내 혈족(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)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
-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자
- 1실(방)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
- 신청대상 청년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
  - 2촌 이내 친족 명의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청년의 거주사실 입증(전입신고, 월세 지급)을 통해 지원 가능
- 지자체 및 국토교통부가 시행중인 현금성 월세지원 사업을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(수혜) 종료 후 신청 가능
- 기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에서 24회를 모두 지원 받은 사람

## □ 지원의 중지

### ○ 지원중지 사유

- ① 부모와 합가(주민등록 여부 불문)하여 거주중이거나,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,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게 된 경우
- ② 주민등록이 말소되었거나, 거주불명자로 등록된 경우
- ③ 지원대상자가 사망·이민 등으로 지원금이 필요 없게 되거나 지원대상자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거부한 경우
- ④ 지원대상자가 지급받은 임차료를 타 용도로 사용하여 3개월 이상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. 다만, 지원대상자가 임대인에게 연체된 월차임을 지급하였음이 확인된 경우 잔여기간의 월세지원금 지급 재개
- ⑤ 타 주소지로 전출, 계약내용 변경 등 변경신청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사유발생 15일 내 월세지원 변경신청하지 않은 경우 또는 지원제외대상으로 거주조건 등이 변경된 경우
- ⑦ 군복무 등 법률상 의무 이행을 위해 주거가 보장되는 타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(단, 사회복지요원, 상근예비역은 제외)
- ⑧ 외국에 최근 6개월간 통산하여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는 경우
- ⑨ 「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」 및 「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중인 경우
- ⑩ 실종신고 절차가 진행 중 또는 가출 또는 행방불명으로 신고 된 후 1개월이 지났거나 해당 사실을 보조사업자(시·군·구)가 확인한 경우

## □ 기타 유의사항

-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, 본인이 제출한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사실과 다를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.
- ‘청년월세 지원사업’에 선정된 지원대상자는 아래 사항을 의무적으로 이행하여야 합니다.

- 지원 중지 사유 발생시 ‘중지 신청서’ 제출
- 주소지 및 임대차계약 사항 등이 변경된 경우 ‘변경 신청서’ 제출
  - ※ 중지·변경 신청 미등록시 중지사유가 발생한 월까지 지급하고, 이후 변경신청을 하여야만 월세지원이 재개 됨.

- 신청서 등 제출 서류에 모든 서명은 본인이 직접 자필 서명(본인의 정자 이름 기재) 하여야 합니다.
- 위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국토교통부 「2026년 청년월세 지원사업」 지침을 준용합니다.
- 본 공고문은 우리 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.
-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콜센터(☎1599-0001) / 천년전주 콜센터(☎063-222-1000) / 전주시청 청년활력과 청년주거금융팀(☎063-281-8767) / 관할 주민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- 아울러 ‘자주 묻는 질문’과 ‘2026년 청년월세 지원사업 한눈에 보기’를 함께 안내해 드리오니 신청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